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495,974,070	14,879,222
일반회계	421,948,135	12,658,444
특별회계	74,025,935	2,220,778
공기업특별회계	43,787,059	1,313,6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478,993	554,3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08,066	759,242
기타특별회계	30,238,876	907,1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05,630	54,16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608,750	168,263
주차장특별회계	1,581,713	47,451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1,242,783	637,28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